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6. 20(금) 10:00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소관)



행 정 재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93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5. 5. 29.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2. 제안이유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노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 기반을 확립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 정의에 “문해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평생 교육이용권” 추가(안 제2조제1호)
- 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설(안 제4조제5항 신설)
- 다.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자격 변경(안 제7조제3항제2호)

- 라.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을 의무화(안 제13조제1항)
- 마. 평생학습관 사업에 노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성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사업 추가(안 제13조 제2항)
- 바.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안 제14조제1항)
- 사.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추가(안 제15조 신설)
-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6조제5호, 제8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4.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조, 제16조, 제20조의 2, 제20조의 3, 제21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40조의3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제1호에서는 평생교육 정의에 “문해교육”, “성인 진로 개발역량 향상교육”, “평생교육이용권”을 추가하고
 - 안 제4조제5항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신설함.

- 안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자격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고
-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평생학습관 사업에 노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성인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자발적 학습 모임 지원 사업을 추가함.
-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의무화하고
- 안 제15조에서는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을 추가함.
- 100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학습이 전 생애로 확대되고, 디지털 전환, 고령화, 직업 재교육 수요 증가 등으로 평생학습의 영역과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 지역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과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여, 개정안에서는 평생교육권이용권 지원, 평생학습관 사업 추가,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2025년 금천평생학습관 사업별 연간 운영 일정 1부.

3. 2024년 금천평생학습관 사업별 추진 실적 1부. 끝.

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21. 6. 8., 2023. 4. 18., 2023. 6. 13.>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

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4. 1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

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본조신설 2016. 5. 29.]

제20조의3(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5. 29.>]

제21조의4(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13.]

추진전략	사업명	장소	연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Qustion 질문/문제해결 학습	신규 금천시민대학 운영	독산												
	구민 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시흥/ 독산												
	학습매니저 운영 지원	독산												
	금천구 평생학습정보센터 운영	독산												
2. Universal 보편적 학습	성인문해교육 지원	-												
	[공모]디지털 문해학습장	시흥												
	민주시민교육	독산												
3. Equitiy 공정/균형학습	노린학습자 정서 사회성 지원사업	독산												
	금천구 노린학습자 지원센터	독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4. Energetic 활기찬 학습	자발적 학습모임	독산												
	개선 금마샘 사업	독산												
	신규 숨은달인학교(재능기부 원데이 클래스)	독산												
	신규 목요 시네마클럽	독산												
5. Network 네트워크 중심 학습	신규 제1회 금천평생학습 축제	구청 광장												
	금천구 평생교육협의회	-												
	금천형 네트워크 연구모임	독산												

□ 추진실적 : 10개 분야 / 3,422회 / 59,512명

(단위 : 회, 명)

사 업 명	운영기간	내용	운영 횟수	참여 인원
구민 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3월~12월	· 6개 분야 30개 프로그램	250	3,841
성인문해교육 운영	1월~12월	· 기초문해(한글,영어 등) · 간담회 및 행사(디지털 체험부스) · 3개 동주민센터(독2,시2,시5) 지원 · 4개 민간기관 지원	1,754	39,465
자발적 학습모임 운영	1월~12월	·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20개 동아리, 174명) · 교육포털 등록 동아리 (219개, 2,661명) · 학습 및 지역사회공헌활동 · 간담회 및 워크숍 · 학습동아리의 날(Gumcheon Club Day) 운영	300	3,250
학습매니저 선발 운영	5월~12월	· 양성과정 연수(18명 양성) · 간담회 및 활동	215	570
금마샘	1월~12월	· 활동인원 : 40명 · 25개 프로그램 /협력 기관 54곳	459	9,180
느린학습자 정서 사회성 지원사업	1월~12월	· 선별검사/전문심리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등 · 연계기관 : 4곳	198	507
금천인문학당	8월~12월	· 명사초청, 테마 인문학 등 7개 프로그램	15	585
두런두런 동네배움터	2월~12월	· 11개 배움터, 34개 프로그램 · 학습실천 프로젝트 등	210	1,827
민주시민교육	8월~11월	· 소양/심화교육, 강의/워크숍	13	212
협의체 운영	1월~10월	· 평생교육 협의회 및 실무협의체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8	75